**인코텀즈Incoterms 2010의 조건**

인코텀즈는 크게 복합운송조건과 해상운송조건으로 나뉜다.

복합운송조건은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 등의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 가능하다.

또한 여러 운송 방식이 순차적으로 함께 사용되나 복합운송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다.

편의상 이를 운송방식불문조건(혹은 규칙)이라 한다.

해상운송조건은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 의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단일 또는 복합 운송을 위한 조건(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EXW, FCA, CPT, CIP, DAT, DAP, DDP**

**EXW(Ex Works): 공장 인도**

- 매도인은 자신의 작업장 구내에서 수출통관을 하지 않은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둘 때 인도하는 것.

- 매도인은 인도장소에서 운송수단에 적재할 의무가 없다.

- 매수인은 불리한 조건(운송비, 보험료, 수출통관 의무)

**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 구내 또는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을 완료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 구내인 경우: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할 의무가 있다.

- 인도장소가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인 경우: 지정장소에서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한 상태로 양하준비만 하면된다. 여기서 양하는 화물을 하역하는 것을 말함.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인도**

- 매도인이 수입국의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부담하는 조건

- 위험 분기점: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시에 위험 분기점 종료

- 비용 분기점: 수입국의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면 비용 분기점 종료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인도**

- 매도인이 수입국의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

- 매도인은 최소부보조건으로 계약가격의 110%로 매매계약과 같은 통화 사용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 인도**

- 매도인이 지정 터미널에서 물품을 반드시 양하한 채로 인도하는 것

- 터미널은 부두, 창고, 도로/철도/항공 화물터미널을 모두 포함

**DAP(Delivered At Place): 목적 장소 인도**

- 매도인이 수입국의 지정 목적지까지 도착 운송수단에 실린 채(물품을 양하하지않은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

- 양하의 의무는 없다(DAT는 매도인의 양하 의무가 있고 DAP는 없다)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인도**

-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완료한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 EXW와 반대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에게 불리한 조건(매도인이 운송비, 보험료, 수출통관의 의무를 부담)

**해상 및 내수로 운송을 위한 조건(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FAS, FOB, CFR, CIF**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 매도인이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에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본선에 선적하는 의무는 매수인이 부담

- 만약 매수인이 특정한 선적 지점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지정 선적항 내에서 적합한 장소 선택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 매도인이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 상에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FAS 조건과 FOB 조건은 해상 및 내수로 수송 조건이기 때문에, 만약 컨테이너 화물이 터미널에 인도되는 경우 FOB 조건이 아닌 FCA 조건을 사용한다.

- 만약 매수인이 특정한 선적 지점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지정 선적항 내에서 적합한 장소 선택

**CFR(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 매도인이 수입국의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되는데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부담하는 조건

-지정 목적항에서의 양하 의무는 매수인이 부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 매도인이 수입국의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되는데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

- 매도인은 최소부보조건으로 계약가격의 110%로 매매계약과 같은 통화 사용

- 위험 분기점: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시에 위험 분기점 종료

- 비용 분기점: 수입국의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면 비용 분기점 종료